

금요 양성 2024년 10월 11일 FAQ #8

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

우리 회헌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자주 대두되는 질문들: 이번 주부터 다음 몇 주 동안 섬기는 지도자 지침서 2010년 개정판에 제시된 몇 가지 질문들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겠다. 평의회나 형제회에서 동일한 질문들이 자주 제기된다. 회헌을 잘 아는 것이 각 등급의 형제회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. 전체 문서의 최신판 완역본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오:

<https://ciofs.info/library/official-documents/> or <https://www.secularfranciscansusa.org/the-general-constitutions-of-the-secular-franciscan-order-2000/>

+ 회원이 한 형제회에서 다른 형제회로 전출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? [회헌 55조]

회헌 55조

회원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다른 형제회로의 전출을 희망하면, 먼저 소속 형제회의 평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소속하고자 하는 형제회 회장에게 전입 사유서를 제출한다. 이 형제회의 평의회는 이전 형제회로부터 서면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 본 다음 전입을 결정한다. (재속 프란치스칸 미국형제회 웹사이트에 있는 전출 양식이 있습니다. 그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시오- 첫번째 페이지에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.)

<https://www.secularfranciscansusa.org/wp-content/uploads/Transfer-Form-OFS-USA-Dec-7-2022.pdf>

-- 다른 형제회로 전출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

-- 전출 양식을 읽은 후에, 질문할 사항들이 있습니까?

-- 전출자는 왜 몇 달 동안 새로운 형제회의 월례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까?

-- 전입될 형제회의 평의회는 전출자의 입적에 대해 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+ 잠정적 혹은 영구적 퇴회나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규정은 어떠한가? [회헌 56조]

56.1 어려움에 처한 회원은 형제회로부터 잠정적 퇴원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. 회장과 영적 보조자가 당사자와 형제적 대화를 나눈 다음, 평의회는 사랑을 갖고 또 신중하게 이 요청을 평가한다. 동기가 합당하면 그 형제에게 다시 생각할 여유를 준 다음에 평의회는 그의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.

-- 회원이 형제회로부터 잠정적인 퇴회를 요청하게 되는 상황들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?

-- 혹시 잠정적인 퇴회를 요청하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? 형제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였나요?

56.2 형제회의 생활이 요구하는 의무를 반복하여 또 장기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칙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행동을 한 회원에 대해 평의회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.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거나 경고 후에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평의회는 비밀투표로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,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
- 어떤 의무의 불이행이 평의회가 회원의 자격을 정지 처분하는데에 영향을 미칠까요?
- 회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
- 왜 평의회는 해당회원과 그 일에 대해 토의해야 하나요? 이런 경우에 왜 대화가 아주 중요한가요?
- " 왜 정지 처분은 "태도를 바꾸지 않거나 재 발생" 후에만 결정되어야 할까요?

56.3 자발적인 퇴회나 정지 처분은 형제회의 기록부에 명기해야 한다. 이 경우에는 형제회에 속해 있으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형제회의 회합이나 활동에서 제외된다.

- 형제회에 관련되어 자발적인 퇴회나 정지 처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회원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?

[퇴회, 정지 처분, 재입회, 영구적인 퇴회에 대하여 앞으로 몇주에 걸쳐 더 다루게 될 것이다]